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에서 인용하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정의에 관한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과 유아보호용장구 안전검사 기준을 정한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규정하고,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 위반 시 시·도경찰청장이 운전금지를 할 수 있도록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91호, 2021. 10. 19. 공포, 2022. 10. 20. 시행)됨에 따라, 운전금지 통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7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호가목 중 “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”를 “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”을 “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”으로 한다.

제84조 중 “국제운전면허증”을 “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”으로 한다.

제97조 중 “국제운전면허증”을 “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”으로 한다.

별표 28 제3호가목제21호 중 “지정차로”를 “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, 지정차로”로 한다.

별지 제73호, 제74호 및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8의 개정규

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통지서

Date

To Mr.(Mrs. Miss):

Registered Address:

Nationality:

Date of Birth:

No. of Driving License:

Issued Authority:

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Law Article 88 you are notified to have an international driving [permit / 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](#) aptitude test as below, Provided not to do so your international driving [permit / 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](#) would not have its validity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

Testing Place: Driver's License Examination Office
(Address)
Time: Until

From: Road Traffic Authority

통지일자: . .

귀하

외국인 거주등록 주소:

국적:

생년월일:

면허번호:

면허발급관청:

귀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[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](#)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하의 [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의](#)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.

장소:
(주소)
일자: . . . 까지

도로교통공단

직인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국제운전면허증 /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Aptitude Test

(시험장 제출용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성명(Name in Full)	생년월일(Date of Birth)	사 진 3.5cm × 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)	
면허번호(Driving License No.)	외국인등록번호(Reg. card. No.)		
등록시도(Reg. address)			
국적(Nationality)	면허발급국(Issued country)	입국연월일(Date of Entry)	유효기간(Valid)

신 체 검 사 서 Physical Examination Card

시력(Vision)			삼색 식별 (Color Vision)	청력 (Hearing Test)	팔다리운동(Extermities)				기타 소견 Others	결과 (Result)
두 눈	우R	좌L			팔		다리			
			☐ 적Yes	☐ 적Yes	우R	좌L	우R	좌L		☐ 적Yes
☐ 적Yes ☐ 부No			☐ 부No	☐ 부No	☐ 적Yes ☐ 부No		☐ 적Yes ☐ 부No			☐ 부No

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.(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.)

년 월 일 (Date :)

병원 (Hospital)

직인

의사면허번호(Medical License No.)

담당의사(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)

(서명 또는 인) Signature

「도로교통법」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국제운전면허/상호인정외국면허](#) 수시 적성검사를 받고자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(According to 1 of Article 88 of the Road Traffic Law, I hereby apply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[International driving permit/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](#) attached the physical examination card.)

년 월 일(Date:)

신청인(Applicant)

(서명 또는 인) Signature

도로교통공단 (Road Traffic Authority)

- ※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적성검사(갱신)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영수확인증 첨부란	수수료	담당	실장	장장
	「도로교통법」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·공고하는 금액			

담당의사 (인)

자르는 선

(병원보관용)

신 체 검 사 서 Physical Examination Card

성명(Name in Full)	생년월일(Date of Birth)									
면허번호(Driving License No.)	외국인등록번호(Reg. card. No.)									
시력(Vision)			삼색 식별 (Color Vision)	청력 (Hearing Test)	팔다리운동(Extermities)				기타 소견 Others	결과 (Result)
두 눈	우R	좌L			팔		다리			
			☐ 적Yes	☐ 적Yes	우R	좌L	우R	좌L		☐ 적Yes

☐ 적Yes	☐ 부No	☐ 부No	☐ 부No	☐ 적 Yes	☐ 부 No	☐ 적 Yes	☐ 부 No		☐ 부No

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.(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.)

년 월 일(Date: . . .)

병원 (Hospital)

직인

의사면허번호(Medical License No.)

담당의사(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)

(서명 또는 인) Signature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[별지 제88호서식] <개정 2022. 10. 20.>

제 호				운전금지통지서	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-		
③ 주 소					
④ 국 제 운 전 면 허 번 호	제 호 . . .			면허발급 국가명(또는 지역명)	
⑤ 상호인정외국 면허증 번호				면허발급 국가명(또는 지역명)	
⑥ 운전금지사유					
금 지 기 간	. . . ~(일간)				
「도로교통법」 제97조에 따라 귀하에게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였기 통보합니다. 년 월 일 (시·도경찰청장) 인					
※ 「도로교통법」 제9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(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며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)					

2106-326(1)

190mm×268mm

85. 1. 28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횡단보도의 설치기준) 시 · 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4. 횡단보도는 육교·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.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 <u>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</u> 중 집산도로(集散道路) 및 국지도로(局地道路): 100미터 제30조(유아보호용장구) 법 제50	제11조(횡단보도의 설치기준) 시 · 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4. 횡단보도는 육교·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.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 <u>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</u> 중 집산도로(集散道路) 및 국지도로(局地道路): 100미터 제30조(유아보호용장구) 법 제50

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제84조(수시 적성검사)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(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)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(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,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)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,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

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제84조(수시 적성검사)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(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)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(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,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)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,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. 다만, 신

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
가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(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,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)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

제97조(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) 시·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
가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(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,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)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

제97조(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) 시·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02 - 3150 - 0659